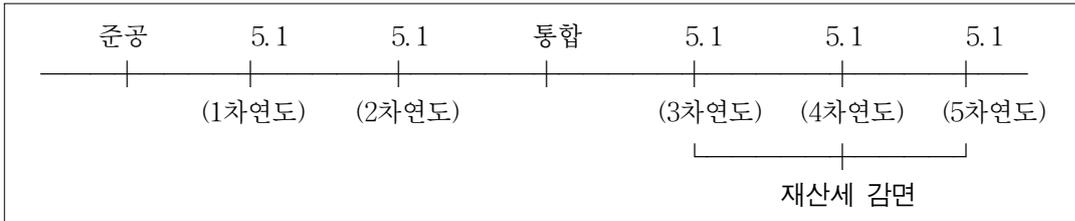


합으로 양수 받은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며 양수 받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소유권 이외에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포함된다.

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치에 의하는 것이다.

[사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감면 요건 판단



이 경우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감면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잔여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잔여기간동안은 감면을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하여 감면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2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치에 의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955, 2002. 10. 9)

또한, 당해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

4.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

현물출자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